

제 511 호
1975. 7.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8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67 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485 호	서울특별시물만개조비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4	
제 1486 호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4	
제 1487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5	
제 1488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	6	
○ 훈	령		
제 416 호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정.....	7	
○ 고	시		
제 10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50	
제 109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적정승인...	50	
제 1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5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97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

1975. 7. 21

● 서울특별시조례 제 967 호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가스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공사의시행) ①공사의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승인한가스 시공업자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로 하
여급 내관의부설 및 연소기구의
연결계조등의 공사에 한하여 시공
하게할 수 있으며, 시공방법, 공사
의 범위등은 규칙에정하는 바에의한다

②시장은 건강단서 규정예외한 공사
에따른 비용의 기준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 (시설분담금) 가스를 공급받
고자하는 자는 별표 3 의 시설분담금
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13 조의 2 (가스미터의 보호관리) ①가
스사용자는 상당한 관리자의 주의로
서 가스미터를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가스미터의 보호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5 조 제 1 항중 "사기 기타 부정
한수단"을 "기기의 훼손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하고, 제 2
항중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공급 장
치를한 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
스공급장치를 한 자 또는 이를 시
공한 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제의 개정시행이
전에 접수한 가스공급시설 신청자

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별표3”

시 설 분 담 금	구 분
30,000 원	구경 20 m/㎝까지

규 칙

서울특별시 분만개조비지급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

1975. 7.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485 호

서울특별시분만개조비지급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분만개조비지급조례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일반의원으로서 분만을 시킬 수
있는 의로기관(단, 영세민 밀집
지역으로 제 2 조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의로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

1975. 7.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486 호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3 항 제 1 호 바목중 "물가지
 절"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협
 정요금 및 에너지 대책에 따른 지
 도, 단속은 제외한다)" 를 삽입하고
 동항 제 2 호 마목중 "양정"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혼, 분식 지도
 단속은 제외한다)" 를 삽입한다.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중 차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차. 상수도 시공업 영업허가 및 상
 수도 시공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 14 조 제 2 항 제 1 호중 가목 및 라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양수기 신설 및 교체
 나. 조력 규칙위반 금수공사의 단속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7.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487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 조 제 2 항 제 2 호에 아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아. 위생업소에 대한 혼분식지도 및
 연료수급계획과 지도단속

제 33 조 제 2 항 제 2 호 나목중 "조정
 과단속" 다음에 "(위생업소의 협정요
 금은 제외한다)" 를 삽입한다.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사목중 "처
 도단속" 다음에 "(위생업소는 제외산
 다)" 를 삽입한다.

제 64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도계

가. 무허가건물 신발생 방지계획
 및 지도제동

나. 항측도의 다목적활용 및 보급

다. 국내 다른지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항측계

가.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나. 항측 처리결과에 의한 원도수정

다. 항공사진에 의한 도면관리
라. 지상촬영 및 관독

마. 사진실 운영

3. 단 속 계

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지도

나. 점검순찰반 운영

제 68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바목을, 동항
제 2 호 중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노선업종의 운송시설 (주차장,
차고등) 인가

라. 점유소의 조정

제 71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다목내지 사
목을 각각 라목내지 아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2 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라
목을 삭제하며 마목 및 바목을 각
각 라목 및 아목으로 한다.

다.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및 관광
교통업에 관한 사항.

가. 관광호텔업, 관광휴양업, 관광식도
업에 관한 사항

제 82 조 제 2 항 제 3 호 중 라목 및 바목
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사목중

관한사항 * 다음에 * (D=300mm 이
상) * 을 삽입한다.

라. 급수공사의 지도 및 설계 시공
감독

바. 가압시설의 설치 및 통합 개량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기계 및 전
기분야 제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도 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직제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

1975. 7.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488 호

서울특별시보건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마목 및 동

항 제 2 호 중 * 마 * 목을 각각 * 바 *

목으로 하고 * 마 * 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제외)의
 합정요금 혼·분식 및 에너지소비
 대책에 따른 지도, 단속
 바.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합정요금 혼·분식 및 에너지소비
 대책에 따른 지도, 단속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 규정을 다
 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 7. 16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416 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
 사무(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운
 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과 신속정확을 기
 하여 시세의 포탈 및 탈루를 미

연에 방지하고 과포의 현실화와 과
 세의 권형을 기하는등 부과사무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성실한 자정신고
 와 납세의무 기증을 확립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서 정
 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1. 구·소에 장이라함은 구의 구청
 장 및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세무조사라 함은 과표결정의 공
 정, 평등을 적법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조사, 탈루세금의 조사, 세원
 개발조사, 자료조사, 탈세정보, 포탈
 세금의 조사, 세무행정질서의 조사
 등을 말한다.
3. 조사요원이라 함은 세무조사를
 위하여 지명된 세무공무원 기타
 세무사찰을 위하여 정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에 협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실도라 함은 결정과포와 실액
 추정과포와의 비를 말한다.
5. 공작활동이라 함은 조사요원의
 외부적 조사활동을 말한다.

6. 조사통제관이라 함은 당해조사
의 담당계장을 말한다.

7. 임의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
권을 통하여 피조사자의 동의에
의거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조사
를 말한다.

8. 강제조사라 함은 조세법 처벌절차
법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탈세법, 질서법등 조세범죄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로써 범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고발
등을 취하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 2 장 자료의 수집처리

제 3 조 (자료의구분) ①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구·소의장이 법상 또는 과징상
보존활용하고 있는 필요한 제반자료
- 2. 세정과장이 각 구소의 보고자료
에 의거 분석평가한 각종 세무자료
- 3. 세무조사과장이 보존 활용하고
있는 세적부 및 기타 수집분석
보존하고 있는 각종자료

4. 정보 및 심리결과 파생된
자료

②전항의 자료는 심리를 위한 준비
자료와 실지조사를 위한 심리자료로
구분한다.

제 4 조 (자료의수집) ①세무조사 과장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소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소의
장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적기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세정과장에게 정기로 제출되거
나 임시로 보고된 자료에 대하여는
따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세정과장은 세무조사 과장이 조사
상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를 위
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세무조사과장은 수사 또는 정기 자료수집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자료처리대상처에 자료조사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상자료제출의무자가 자료제출 독리에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제출자료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또는 자료제출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에는 임의조사 또는 강제조사에 의하여 해당자료를 수집 확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자료보고 및 협조의무자)

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자 또는 조사요원의 질문검사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를 한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법처벌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므로써 조사사무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집자료의 정리) 세무조사과장은 법상보고서, 직접조사자료,

부과조사시 파생된 자료, 정보, 민원 및 심리결과 파생된 각종자료를 분석평가하여 조사에 직접 필요한 직접자료와 일반통계적 간접자료로 분류 정리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료의 처리) 세무조사과장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 평가하여 분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세에 직접 근거가 되는 조사자료는 완전조사 확인한후 즉시 추징 조치하여야 한다.
2. 실지조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 근거가 되는 자료는 세무조사회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결미한 정보 기타 민원에 의한 자료는 구. 소외 장에개 그 조사처리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세무조사일반사항

제 8 조 (조사의 일한적 구분) ①세무조사는 각종조사자료를 분석평가

하여 조사대상을 세목별 조사구분
에 의거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
립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의 제
회 조사와 정보 및 계획조사에 의한
한 범죄사건의 자료에 의하여 실
시하는 개별조사로 구분한다.

② 계획조사는 세목별로 다음의
조사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유흥음식세

- (1)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적정
여부조사
- (2) 중별지정 및 업태의 적정여
부조사
- (3) 비과세 지정 조사 (면세 장소 및
호텔과 유사한 여관)
- (4) 휴폐업 확인조사
- (5) 과표결정의 적정 여부조사
- (6) 외국인 관광객 비과세 행위조사
- (7) 요금영수증교부 및 장부성실
기장이행 여부 조사
- (8) 간접자료조사

2. 취 득 세

- (1) 법인실사
- (2)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 비조사

- (3) 비과세결정분 사후조사
- (4) 미등기 이전물건 탐문조사
- (5) 국공유재산 매각상황조사
- (6) 건축허가 실태조사

3. 재 산 세

- (1) 토지등급 및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 조사
- (2) 건물종류분류와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 조사
- (3) 지압조사 (과세누락지조사)
- (4) 건물일제조사 (과세누락색출)
- (5)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조사
-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공한지
조사
- (7) 비과세결정이 된 공용토지와
공공용 토지의 유효사용 여부
조사

4. 자 동 차 세

- (1) 자동차등록상황 조사
- (2) 과세대상증기 (노상운행트랙터
담프추력등) 조사
- (3) 체납자동차 미합류차량조사

5. 도 속 세

- (1) 밀도살조사
- (2) 신고책역과 결정책역의 적정 여부조사

6. 면 허 세

- (1) 면허책 과세대상자 조사
- (2) 면허증발 및 증발세액 적정 여부 조사
- (3) 감액결정분 확인조사
- (4) 세액장 대사 (對査)
- (5) 체납자에 대한 면허지령서 교부 여부 조사

7. 농 지 세

- (1) 농지세 수납실적조사
- (2) 경계작물 경작지 읍면농지세 과세 여부조사

8. 주 민 세

- (1) 특별징수의무불이행자 조사
- (2)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와 특별징수의무자 조사
- (3) 신고책역과 결정책역의 적정 여부 조사
- (4) 법인세 소득세의 확정결정세액과 정기분 소득세할 조사

- (5) 법인감등할 과세대상자 조사
- (6) 개인감등할 비과세대상자 적정여부 조사

9. 마 권 세

- (1) 승마무표권 발매실적조사
 - (2) 신고책역과 결정책역 적정여부 조사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
- 제 9조 (조사의 방법) ①세무조사와 장은 세무조사의 실효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계획조사중 실질상 중요한 조사구분은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기간은 세무별조사구분별로 남기 기타 유리한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수 시 조 사

계획조사중 심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개별조사의

경우에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단, 이 경우 정기조사에 속하는 계획조사는 이를 수시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탁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 국세청 및 기타 협조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조사로서 교도의 조사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위탁실행한다.

4. 합동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과 합동하여 집행하는 조사로서 조사의 객관도를 특히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행한다.

5. 교환 조사

구청간, 지방자치단체간에 세무공무원을 교환하여 집행하는 조사로서 구소간 견형과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조사 등의 경우에 실행한다.

㉔ 전항의 조사방법의 선택은 세무조사의 목적대상, 방법, 시기, 난이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무관할) 세무조사집행의 사무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조사는 시장의 결재에 의하여 재무국장이 집행한다.
2. 세무조사의 대상은 세무조사과장이 선정하고 재무국장이 결정한다.
3. 개별조사는 재무국장의 결재에 의하여 세무조사과장이 집행한다.
4. 경미한 사항의 개별조사는 세무조사과장이 전권집행하거나 소관 구소의장에게 지시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 4 장 정보의 처리

제 11 조 (정보의 접수) 수집접수된 범죄행위에 대한 탈세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접수 또는 수집된 정보로서 구두로 제공하거나 탐문된 경우에는 이를 정보접수처리부(별지 제 1 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 2. 문서로서 접수된 정보 또는 권호의 정보보호처리는 정보처리권 (별지제 2호서식)을 첨부증빙물진과 함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3. 정보에 대한 결정은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정보의 조사처리) ①수집 접수된 정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정보내용이 범칙행위로서 명확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엄밀히 내사한 연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정보내용이 다연하여 범칙행위로서 신빙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사건내사를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세무조사과장은 정보관계 증빙물진 및 사건내사에 대한 처리의 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무국장에 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요원은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

3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영장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제무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 리 사 무

제 13 조 (심리자료) 세무조사과장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세무별 조사구분별로 조사대상자 및 조사사항 심리카드 (별지제 3 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심리대상의 판정) 심리대상은 수집자료분석평가에 의하여 세무별 조사구분별로 신고 및 결정과표의 현실도가 양호 또는 극히 낮은 대상체인가 또는 조사를 요하는 사항인가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일정기준을 설정 판정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심리결과처리) 건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결정과표 및 기타 조사대상을 심리분석한 결과에 따라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자료

심리결과 현실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자와 조사를 요한다고 판정된 사항

2. 과세자료의 활용

심리결과 그 현실도가 낮은 자와 조사를 요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사의 능력과 효과등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3. 우 대 조 치

심리결과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 6 장 세무조사의 집행

제 16 조 (조사집행의 구분) 계획조사는 임의 조사의 방법으로 개별조사는 강제조사의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조사대상자선정) 계획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심리결과 현실도가 지극히 낮은자중에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조사의 효과와 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심리결과 과표 및 경영상태가 불성실하여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세원조사결과 및 공작활동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조사결과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각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자

4. 소재지의 변경 납세 의무자의 명의 변경 또는 인적변경이 빈번하여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자

5. 자진신고율이 현저히 불량한자

6. 휴업·폐업이 빈번한 자

7. 성가가 높은 영업권을 가지고 의형 과표가 높은업소로서 결정과표가 현저히 낮은 업소

8. 과표의 신장율이 극히 낮은 업소

9. 심리 또는 정보에 의한 사찰 대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0. 비과세 및 불균일 과세강소에서 세금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p>11. 각종 세목의 세원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대기업체 (법인실사일 경우에는 각 세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12. 대규모의 부동산 소재업소</p> <p>13. 영업세 과표와의 격차가 심한 업소</p> <p>14. 간접자로 추계조사결과 세액 탈의 심증이 강한 자</p> <p>15. 기타 권형분석결과에 의거 현저히 과표가 불합형하게 적정된 자</p> <p>16. 영업규모가 현저히 확대된 자</p> <p>17. 업종 변동윤일이 용이한 업태</p> <p>18. 과세부담 비중이 큰 업종 및 과세물건</p> <p>제 18 조 (조사계획의 수립) ①세무조사과장은 수집분석 평가한 조사자료에 의거 계획조사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p>	<p>근거대상자, 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반월성, 피조사자 (대상자) 특정 방법, 조사결과, 부명요청, 조사통제 방법, 조사결과처리방법, 조사의 효과 기타 조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조사학수 2일전까지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조사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계획 인정이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 적기조사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정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세무조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구소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 시행토록 지시하고 이를 조정 통제할 수 있다. 이 때 구·소의 장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세무조사를 집행하여야 하며 제 28 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조사완료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p>
--	--

고하여야 한다.

④ 세정과장은 각종 세무행정상의 보고자료 및 통계분석자료에 의거 세무조사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과장에게 해당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세무조사과장은 종합적인 세무조사 계획에 의거 이를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조 사 의 착 수) ① 세무조사과장은 세목별 조사구분별로 그 조사구분의 성질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기간과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은 계획조사 개별조사를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별 3 인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착수 직전에 세무조

사과장이 세무조사대상자배정표 (별지 제 4 호서식) 에 지정 날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요원은 조사착수 전에 공정 신속한 조사를 보증하는 서약서 (별지 제 5 호서식) 를 세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사의 착수를 지명받지 아니한 자의 조사 또는 조사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사는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이유를 세무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조 사 의 집 행) ① 임의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1. 조사요원은 피조사자, 법칙첩의 자에게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별지 제 39 호서식의 증명서와 세무조사대상자 배정표 (별지 제 4 호서식) 를 제시하여 조사집행의 뜻을 고하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물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권호의 질문검사권은 조사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3. 조사요원은 제반 증빙물건 및 기타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의거 조사내역서(별지 제 6 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 피조사자의 날인을 받아 1 통은 피조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강제조사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사요원은 압수수색영장청구(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법원 발부한 수색영장을 법치협외자 또는 참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영장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요원이 강제조사에 의하여 신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압수 또는 영치한 때에는 압수영치조서 및 목록(별지 제 8 호서식) 2 통을 작성하여 1 통은 피수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압수물건의 관리) ① 압수

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은 즉시 검토하여 압수영치물건검사보고서(별지 제 9 호서식)를 작성하고 사찰사무에 관련이 없는 것은 보관증을 받고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② 사찰사무에 관련이 있거나 탈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장부 기타 물건은 세무조사과장이 직접 보관한다.

③ 사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압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부 기타 증빙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서상이나 기타에 대하여 봉합하여야 한다.

④ 사관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법칙사건의 근거가 되는 장부 기타 증빙물건의 물건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⑤ 압수한 장부 기타 물건을 반드시 압수물건대장 (별지 제 10호 서식)에 그 수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22 조 (소환, 심문, 증빙물건 제출 요구) 조세법처벌절차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소환 심문하거나 증빙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환장 (별지 제 11호 서식) 또는 증빙물건제출요구서 (별지 제 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관계기관의 협조요구) 조세법처벌절차법 제 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협조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외서 (별지 제 1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세무조사의 결과처리

제 24 조 (조사보고) ① 조사요원이 세무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법칙혐의자 신분조서 (별지 제 14호 서식) 또는 업태실태조서 (별지 제 15호 서식)와 법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별지 제 16호 서식) 기타 구체적 조사사항별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의 조사인 경우에는 그의 일까지 기타 개별조사인 경우에는 늦어도 2일 이내에 재무국장에게 복수 복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요원이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하였을 때에는 검찰의 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요원이 법칙의 심증은 언지 못한 경우에도 제 1항의 보고서에 무혐의 결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보고서에 그 사

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제조사의 뜻을 첨기하여야 한다.

제 25 조 (조사결과처리) ① 조사결과 추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 소의 장에게 지체없이 추정지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과장은 제 24 조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법칙의 심증을 얻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소의 장에게 10 일 이내에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 9 조 제 1 항의 통고처분 (별지 제 17 호 서식)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세법 처벌절차법 제 9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해당하는 법칙사건에 대하여는 구 소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10 일 이내에 고발 (별지 제 18 호 서식) 으로서 하여야 한다.

④ 법칙사실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5 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세무조사의 통제 및 조정

제 26 조 (조사의 통제) ① 세무조사과장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요원을 교체하거나 진행중인 조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은 매일 세무조사과장에게 조사 진행상황 (별지 제 19 호 서식) 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조사중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세무조사과장 또는 권한있는 상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요원은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제 24 조의 조사보고서가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조사 또는 보고가 지연되는 사유를 제무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과장은 수시로 조사 통제관으로 하여금 조사현장을 확인 독려하게 하고, 조사진행상황을 확보하게 하여 조사진행을 조정하여

야 한다.

제 27 조 (구·소의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통제) ① 구·소의 장은 매월 세원조사, 자료조사, 입회조사 및 기타 필요한 세무조사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소의 장은 매월 전항의 조사계획에 의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소의 장은 제 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액의 비중이 큰 대상 또는 세무행정상 특히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적이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조사의 실행은 복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입회조사인 경우와 복수 부명을 요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3인이상으로 반을 편성하며, 조사결과를 반드시 복수 부명토록 하여야 한다.

⑤ 구·소의 장은 제 1항은 조사

계획을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거 매월 작성하여 당월본은 전월 25일까지 조사보고서 (별지 제 21호 서식)는 익월 10일까지 제무국장, 참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계획과 조사보고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소의 장은 제 1항의 조사계획을 변경 일정대상조사(조사)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무국장참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제무국장은 제 1항 및 제 18조 제 3항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른 시행여부와 공정·성실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과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황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무국장은 전항의 확인결과 제 29조(조사업무의 조정) ①세무조사과장은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조사요원의 실적평가에 의거 조사방법과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무국장은 제 7항의 확인결과에 의한 평가를 하여 세무조사 자로로 활용함과 동시에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구, 소의 세무과장, 계장에 대한 인사 고과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조사결과외 통지) ① 세무조사 과장은 특정인의 구체적 범칙행위 및 기타 세무조사 결과로 추정하였거나 봉고처분등의 개별적 조사처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조사보고서(별지제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종료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세정과장에게 1통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전항의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거 과징업무를 조정, 시정하여 구, 소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세무조사과장은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조사요원의 실적평가에 의거 조사방법과 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조사결과 범칙행위 담당위원 과세처리, 세원 탈루 및 기타 범칙원인이 과세공무원 또는 조사요원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7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정 보 처 리 건

접수번호 호 년월일 19 . . .

정보제공자주소 상호
· 성명

외제보자주소 상호
· 성명

제 보 계 요

조 치

문 의 질

과 요

<별지제 4호서식>

세무조사대상자배정표

업 소	상 호	업주명	원 과 표	세 액	조사자	조 사 지	조 사 간

위 자에 대한 세무조사물 명함

197

세무조사과장

<별지제 5호서식>

서 약 서

서울특별시청 귀하

별지업소에 세무조사 세무사찰의 명을 받아 직무불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과도 타협치 않으며 공평
 과 공정으로 소임을 다할것은 물론 본조사업무에
 관련되어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197 . . .

근 무

직성명

㉑

<별지 제 6 호서식>

조 사 내 역 서

조사월일	번호	수량	매상액	비고

상기사실을 확인함

197

인 회 인 또는 인 주

귀 하

<별지 제 7 호서식>

서 울 특 별 시

계 호 197 . . .

수신 서울지방검찰청장검사장

제목 압수수색영장청구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을 하고져 하오니 197 . . .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직업, 성명	
생년월일	
압수수색 또는 검사할 장소	
압수 또는 검사할 신체	
압수할 물건	

1. 범죄사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범죄와 같음
 서울특별시 세무공무원

계 호 서울지방검찰청 197 . . .

수신 지방법원장

제목 압수수색명장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청구가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영장의 발부를 신청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

<별지 제 8 호 서식>

1. 영 의 조 서

피 의 자 주 소

성 명 당 세

에 대 한 조 세 법 처 리 법 법 위 반 사 전 에 관 하 여 세 무 공 무

원 는 다 음 과 같 이 197 년 월 일 시 분

부 터 시 분 까 지 사 이 에 구 동 번 지

호 에 서 조 세 법 처 리 법 제 2 조 및 제 5 조 의 규 정 에

의 거 하 여 별 지 부 록 에 문 건 을 영 처 하 다

197 년 월 일

세 무 공 무 원

인 회 인

영 처 경 위

2. 영 치 목 록

물건번호	물 건	수 량	소 지 자 또는 계 출 자 주 거 성 명	소 유 자 주 거 성 명	비 고

<별지제9호서식>

차 압 물 건 검 사 보 고 서
영 치

1 9 7

검 사 자 과 근무

직 성 명 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구 동 번 지 에 대한 지방세법

위 반 사 전 을 1 9 7 장 부 및 서 류 의

내 용 을 검 사 한 바 별 지 와 같 이 보 고 함.

<별지 제 10 호서식>

압 수 물 전 대 장

번호	압수월일	압수 품목	수량	비고

<별지 제 12 호서식>

서울특별시

세 조

197

수 신

세 목 증빙물건 제출요구

에 대한 조세법

위 반행위 사건조사상 필요하오니 귀하의 취급 (보관)

에 속하는 물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제출일시
- 2. 제출장소
- 3. 제출할물건

서울특별시장

<별지제 13호서식>

서울특별시

제 조 197 . . .

수 신

제 목 조세법칙범의사건조사에 대한 협조의뢰

에 대한 조세법위반

합의사건조사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장계원의 작성명

나 조사사항

서울특별시장

<별지제 14 호서식>

법 치 령 의 자 신 분 조 서

본	적	
주	소	
직	업	성 명
생	년	월 일
호	주 또는 세대	
주	와의	관 계
재 산 및 생 활 도	부	동산, 동산
	가	격
	가	족 수 및
	월	수 인
	생	활 정 도
교		육 정 도 와 사 회 적
지		위 명 망 의 유 무
건	관	유 무
기		타 참 고 사 항
서 기 년 월 일 조 사 자 서 울 특 별 시 세 무 공 무 원		

<별지제 15호서식>

업 체 실 태 조 사 서

소재지 또는 사업장

상 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업태

업종

- 1. 설립 또는 개업년월일
- 2. 자본금 또는 투자액
- 3. 부 채
 - ① 금 융 기 관
 - ② 사 채
- 4. 주요생산품 또는 음식물품
- 5. 종업원 수
- 6. 지정설치관계
- 7. 동업자 여부
- 8. 범죄건과 여부
- 9. 기 타 사 항

상기 와 같이 조사함

197 . .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조사과

세무공무원

귀 하

별지 제 16 호 서식

범죄경위 및 처리의견서

영 업 장 소

상 호

업 종

납 세 의 무 자

(광 년 세)

1. 범 죄 경 위

2. 본 건 처 리 의 견

197

조 사 자 세 무 공 무 원

서 울 특 별 시 구 파

직 성 명 ㉞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제 17 호서식		(간)	
통 지 서			
사건제 호		197 년 월 일	
1. 범칙 혐의자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시 구 동 군 군 동 업	가 번지 (동 반) 연령 당 세	
2. 범 죄 사 항			
3. 위 반 사 항	법 제 법 제	조 조	법 제 조
4. 적 용 사 항	법 제 조제법치법법제 법 제	조제 조제 조제	합제 합제 합제
5. 벌과금상당금액	금	원정 (₩	원정)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 물건			
7. 추징금상당금액	금	원정 (₩	원정)
8. 소 요 비 용	금	원정 (₩	원정)
9. 남 부 장 소	상기 5 ~ 8 의 금액 및 물건을 남부할것. 단, 몰수 또는 몰취품의 해당 하는 물품의 대와오는 남부의 신임을 할것.		

(합)

상기조세법 처벌절차법 제 9조제 1항에 의하여 통고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의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통고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소관 검찰청에 고발함.

발과금상당금액		금	원정
밤 치 에 판 한	세	금	원정
	세	금	원정
	세	금	원정
	세	금	원정
	세	금	원정
지		금	원정
소요비용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물수 또는 물취에 해당한 물건과수량 상기 합계금액 및 물품을 납부하여야 함			

별지 제 18 호 서식	
고 발 서	
사건제 호	19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법 처벌법 위반 (조세법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파 의 자	주 소
주 소 성 명	직 업 성 명 (남) (여) 년 령 당 세
범 죄 년 월 일 및 사 실	
범 죄 증빙 물 선	(환 기 금 원 보 관 중 으 로 인 계)
고 발 규 정	므로 조세법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비 고	
유 침	별지 목록과 같음

별지제 19호서식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	결 재

세무조사진행상황보고서

조사자직성명

아래와 같이 조사진행중이 옴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재무국장 귀하

조사업소	상호	업태	업종	성명	조사내용	비고

별지 제 20 호서식

세 무 조 사 계 획 서

1. 조 사 목 적

2. 조 사 대 상

업 소

상 호

업 종

업 태

업 주 성 명

3. 조 사 기 간

4. 조 사 방 법

5. 조 사 반 편 성

6. 대 상 자 백 경 방 법

7. 조 사 결 과 처 리 방 법

8. 조 사 의 효 과

9. 기 타 사 항

별지 제 21 호서식

세무조사보고서

조 사 업 소					조 사 기 간	조 사			내 용			비 율
업 소	상 호	업 종	업 태	업 주 성 명		전 월 과 표	세 액	당 일 조사액	할 추 정 과 표	세 액	비 율	

(조사근거 별첨)

별지제 22호서식

1. 세무조사결과종합분석평가보고서

정보 구분	합생 건수	사 건 처 리 구 분				실 직			비고
		속고 처분	통고 처분	조사 혼방	조사 증거	추징 세액	벌과 금	합 계	
검찰									
경찰									
군기관									
타기관									
자체									
계									
문 제 점									
태 상									

별지 제 23 호 서식

직원별 조사 실적 평가표

담당자	조사수명 진 수	완 결 진 수	미 결 진 수	비율	조 사 실 적		발 과 금	합 계	평가도
					인상조정 업 소 수	추경세액			

별지 제 25 호 서식

조사업무처리의 능력과 성실도 평가표

구분 담당자	사무조사 하명건수	사무조사 완료건수	비율	실 적				담당직무 의성실도	비고
				달조과표	조사과표	차인과표	비율		

성실도:우.양.가로 표시함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0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제 92 호(75.6.20)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5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18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경기도시흥군서면광명리 306-8 외 3 필지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 (광명상업전수학교)
- 3. 면적및규모 : 8,250 ㎡ (2,500 필)
- 4. 시행자의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개봉동 62-18
광명상업전수학교장 김 형 식

5. 사업의 착수및준공예정일 :

1975.7 - 1975.12.30

- 6.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경기도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09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용도 지역 변경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제 108 호(75.6.23)로 일부변경 결정고시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 지역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1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변경승인조사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상 업 지 역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각인부	198,500	
	성동구반포동 385 번지일대	113,515	
나. 교육 및 연구지구 지적변경승인조사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교육및연구지구	관악구봉천동. 신림동 각인부	198,500	
<p>※ 도면생략. 지적승인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분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보광동 80-9, 87-10</p>	
<p>1. 건설부고시제 177 호(62.12.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 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사업의 종류및명칭 : 보광동버스종 점. 강변 3 도로도로확장공사</p>	
<p>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토목과에 비 치하여 제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p>		<p>3. 사업의 규모 : B=15m, L=180m</p>	
<p>1975. 7. 18 서울특별시장</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7.1 - 1975.11.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 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 용법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성 명 : 별첨토지조서</p>	

인 가 증

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 보광동 80-9, 87-10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보광동버스중점, 강변 3로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15m, L=18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 7.1 - 75.11.30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110 호
8.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별첨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서울특별시장

<인가조건>

1.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계약설계도서 (평면도)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1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77 호 (62.12.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신창동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산천아파트진입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6m, L=519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8.1 ~ 1975.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서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신창동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산천아파트건
입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6m, L=519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기간 : 75.8.1~75.12.30
 6.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92 호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8. 소유자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 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별첨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7.18

서울특별시장

<인가조건>

1.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보
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2. 별첨계약설계도서(경면도)에 의
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11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제 177 호(62.12.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도
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
시제 123 호(73.4.4)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토목과에 비
치하여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1975. 7.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이태원동, 동
빙고동, 용산동, 서빙고동
2. 사업의 규모 : L=1,600m, B=25.40^m
3. 사업의 종류및명칭 : 반포대교전인
로확장공사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착공및준공예정일 : 75.3.10~75.12.30
6. 수용및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
소·성명 : 별첨

인 가 증

1. 사업 시행 위치: 용산구 이태원동 동빙고동, 용산동, 서빙고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반포대교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L = 1,600m$
 $B = 25m - 40m$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5. 인가 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7.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75. 3. 10 - 75. 12. 30.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별첨 설계 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3. 4

서울특별시

<인가조건>

1. 사업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약 설계 도서 (평면도) 에 의하여 시공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 113 호

도시 계획 사업 (도로) 실시 계획 인가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 12. 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 4. 4) 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재산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5. 7. 18.

서울특별시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용산구 청파동 130번지 부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파동 130번지 부근 도로 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L = 20m$
 $B = 320m$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및 준공 예정 : 75. 1

- 75.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조사

인 가 중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청와동 130번지 부근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청와동 130번지 부근 도로 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20m
L = 32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감

5. 사업기간 : 75.7.1-75. 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7.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3 호

8. 소유자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및 이해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별첨 설계 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5.

서울특별시감

<인가조건>

1. 사업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별첨 계약 설계 도서(평면도)에 의하여 시공 설계 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21

서울특별시감

가. 시설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이	의	도	한	양	아	파	트	시	장	영	동	포	구	여	의	도	동	1	외	96	449	평	신	설		
여	의	도	삼	부	"	"	"	"	"	"	"	"	"	"	"	"	"	"	"	"	1	외	103	437	평	"

별첨 : 도면표시와 감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등포구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5호 (73. 9. 25)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 (학교)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46조 제 3항 및 동법 제 85조 제 1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호 (73. 4. 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1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692-9 외 13필지

나.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학교)

다. 사업시행면적 : 10,05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마. 사업기간 : 1973. 12. 18 - 1974. 9. 31.

바. 준공도면 : 준공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6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 지정 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9호 (75. 5. 14), 서울특별시고시 제 78호 (75. 5. 24), 서울특별시고시 제 52호 (75. 6. 20)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의 시행과 지정 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조 제 5 항 및 건설부고 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한다. 가. 공고내용		1975. 7. 18. 서울특별시 광		
사업 종류 및 명칭	사 업 시 행 자	면 적	시 행 자	비 고
도시 계획 사업 (학교)	동대문구 망우동 440 의 1 필지	3,925.3 평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망우국교
"	성동구 중곡동 20의 1 필지	3,687.6 "	"	성동국교
"	서대문구 성산동 95의 1의 1 필지	3,113 "	"	중동국교
"	서대문구 구산동 산 20의 1의 22 필지	3,712.9 "	"	구산국교
"	관악구 신림동 589의 2 의 12 필지	2,918 "	"	낙원국교
"	영등포구 외발산동 341 의 17 필지	4,066 "	"	발산국교
"	동대문구 면목동 산 35의 2의 3 필지	4,253 "	"	면목중
"	성동구 행당동 70-14 4 필지	3,991 "	"	행당여중
"	영등포구 목산동 산 60 의 1의 2 필지	3,791.5 "	"	강서중
"	영등포구 고척동 245의 14 필지	4,205 "	"	오류중
"	관악구 봉원동 491-5 14 필지	3,013 "	"	구암국교

◎ 서울특별시공고제 16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5 호 (74. 9. 16)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학교)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46 조 제 3 항 및 동법 제 85 조 제 1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 4)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7.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05 의 3 필지
2.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학교)
3. 사업시행면적 : 12,10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기간 : 1975. 1.20 - 75. 6. 2
6. 준공도면 : 준공도면 생략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 9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75. 7. 18.

마포구청장 손영한

◎ 마포구공고제 33 호

1. 공사의 종류 : 공덕동로타리-서울대교간도로확장공사
2. 공사시행지 : 마포.도화 1.2 동, 공덕 2 동 각일부
3. 공사착공년월일 : 1975. 7. 21
4. 공사준공예정년월일 : 1975. 8. 31
5. 공사비 : 687,000,000
6. 부담금한도액 : 226,000,000
7. 부과구액 : 별첨도면
8.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사 령

◎ 1975. 7. 10

용 산 구 지방행정 최석효
 서 기
 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
 (75. 7. 10)

◎ 1975. 7. 18.

성 북 구 지방토목 양영규
 기사보

<p>도로시설과 파견 근무를 해제함.</p>	<p>◎1975. 7. 23.</p>
<p>시 민 과 지방행정 이 필 남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위를 해제함. (75. 7. 18. 자)</p>	<p>보건예방과 지방간호 조묘자 기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도로시설과 지방토목 회 식 기 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1975. 7. 19</p>	<p>◎1975. 7. 25.</p>
<p>성 북 구 지방토목 양 영 규 기 사 보 운명출장소 근무를 명함.</p>	<p>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 이 삼 권 기 사 보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 부이사관 이 인 제 지방부 이사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운영담당관에 보함. (75. 7. 19)</p>	<p>도 봉 구 지방토목 나 원 규 기 사 보 서대문구 (방호담당관 파견 해제)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